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604호

거여동 555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(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555번지 일대 모아주택사업(소규모주택정비사업) 시행을 위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승인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12월 28일
서울특별시

1.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

가. 관리지역의 명칭 : 거여동 55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

나.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

구분	위치	관리계획 요건	노후불량건축물	비고
기준	송파구 거여동 555번지 일대	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㎡ 이하일 것	노후·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, (사업시행지별 57% 이상 포함)	
현황		12,615.7㎡	전체 : 93동 노후불량 : 78동(83.9%)	

다. 정비방향 : 저층 노후주거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배치 및 보행환경 개선

2.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

가. 관리지역의 지정

○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

명칭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
거여동 55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	송파구 거여동 555번지 일대	-	증)12,615.7	12,615.7	-

나.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계획(안)

○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명칭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
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송파구 거여동 22번지 일대	50,853.0	감) 10,000.8	40,852.2	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46호 (’96.03.11)

※ 사업시행인가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

다. 토지이용계획(안)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

구 분				면적(㎡)	구성비(%)	비 고
합 계				12,615.7	100.0	-
시행 구역	공동주택 용지	A	모아주택 가능구역 (가로주택정비사업)	11,710.0	92.8	통합 정비시
		A-1	모아주택 가능구역1 (가로주택정비사업)	7,906.0	62.7	사업시행 구역별 정비시
		A-2	모아주택 가능구역2 (가로주택정비사업)	3,804.0	30.1	
	정비기반 시설	공공시설		189.3	1.5	1개소
		도로		585.5	4.7	-
시행 구역외	정비기반 시설	도로		130.9	1.0	

※ 사업시행구역별 분리시행시 공공시설은 1구역에서 기부채납토록 함

라. 정비기반시설 ·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(안)

■ 도로 계획(안)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

구분	합 계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								
기정	소로	2	5	8	국지도로	187(69)	거여동 564-11	거여동 561-13	일반도로	-	서고 7호 (12.1.12)	-
변경	소로	2	5	4~8	국지도로	235(81)	거여동 564-11	거여동 561-13	일반도로	-		도로연장

구분	합 계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								
기정	소로	3	1	4	국지도로	84	거여동 555-9	거여동 555	일반도로	-	서고 7호 (12.1.12)	-
폐지	소로	3	1	4	국지도로	-	거여동 555-9	거여동 555	일반도로	-		폐도
기정	소로	3	2	4	국지도로	94(10)	거여동 556-6	거여동 362-1	일반도로	-	서고 7호 (12.1.12)	-
변경	소로	2	A	8	국지도로	124	거여동 557-2	거여동 362-1	일반도로	-		도로연장 및 확폭
기정	소로	3	4	4	국지도로	31	거여동 557-2	거여동 557	일반도로	-	서고 7호 (12.1.12)	-
폐지	소로	3	4	4	국지도로	31	거여동 555-9	거여동 555	일반도로	-		폐도
기정	소로	3	5	4	국지도로	84(73)	거여동 356	거여동 556	일반도로	-	서고 7호 (12.1.12)	-
폐지	소로	3	5	4	국지도로	-	거여동 356	거여동 556	일반도로	-		폐도
기정	소로	3	7	6	국지도로	80(22)	거여동 561-13	거여동 559	일반도로	-	서고 7호 (12.1.12)	
변경	소로	3	7	6	국지도로	22(-)	거여동 560-13	거여동 559	일반도로	-		도로축소
기정	소로	3	8	4	국지도로	66(4)	거여동 561	거여동 561-6	일반도로	-	서고 7호 (12.1.12)	-
변경	소로	3	8	4	국지도로	66(2)	거여동 561	거여동 561-6	일반도로	-		면적변경
기정	소로	3	9	4	국지도로	73(21)	거여동 564-22	거여동 562	일반도로	-	서고 7호 (12.1.12)	-
변경	소로	3	9	4	국지도로	52(-)	거여동 564	거여동 562	일반도로	-		도로축소
기정	소로	3	10	4	국지도로	30(3)	거여동 557-3	거여동 557-5	일반도로	-	서고 7호 (12.1.12)	-
폐지	소로	3	10	4	국지도로	30(3)	거여동 557-3	거여동 557-5	일반도로	-		폐도
기정	소로	3	12	4	국지도로	109(2)	거여동 564-11	거여동 564	일반도로	-	서고 7호 (12.1.12)	-
변경	소로	3	12	4	국지도로	109(2)	거여동 564-11	거여동 564	일반도로	-		면적변경
기정	소로	3	a	4	국지도로	112(83)	거여동 552-4	거여동 145-32	일반도로	-	-	-
변경	소로	3	a	4	국지도로	30(-)	거여동 552-4	거여동 552-5	일반도로	-		구역 내 폐지

■ 도로 계획(사유서)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소로2-5	소로2-5	도로 연장	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기정 소로2-5호선과 소로 3-10호선 합병(소로3-10호선 폐지)
소로3-1	-	도로 폐지	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도로 폐지
소로3-2	소로2-A	도로 연장 및 확폭	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도로 연장 및 확폭
소로3-4	소로3-4	도로 폐지	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도로 폐지
소로3-5	소로3-5	도로 폐지	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도로 폐지
소로3-7	소로3-7	도로 축소	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도로 축소
소로3-8	소로3-8	면적 축소	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도로 면적 축소
소로3-9	소로3-9	도로 축소	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도로 축소
소로3-10	-	도로 폐지	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도로 폐지
소로3-12	소로3-12	면적 축소	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도로 면적 축소
소로3-A	소로3-A	도로 축소	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구역 내 도로 폐지 및 도로 축소

■ 입체도로 계획(안)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구분	규모		비고
					당초	변경	
신설	소로 2-B	도로	거여동 560-13 일원	길이	-	21.6m	*비도시계획시설 : 지하에 공동주택 부설주 차장 설치
				폭	-	8m	
				높이	-	지표면 -1.2m~ 지상부	
				수평투영면적	-	183.5㎡	

※ 입체결정도로의 길이, 폭, 높이 면적은 구역 값으로 향후 측량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

■ 도로 계획(사유서)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소로 2-B	도로 신설	구역 경계 남측 공동주택 진입도로 및 구역내 지하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입체결정

■ 사회복지시설 계획(안)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①	사회복지시설	거여동 555 일원	-	증) 189.3	189.3	-	-

※ 사회복지시설내 세부 도입시설은 사업시행계획인가시 관련부서와 협의 및 수요 조사를 통해 결정

－ 건축물의 범위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건폐율(%)	용적률(%)	높이(층)	최초 결정일	비고
신설	①	사회복지시설	거여동 555 일원	60	150	4층이하	-	-

■ 도로 폐도 및 입체결정 등에 관한 계획(안)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

○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(안)

- 모아타운 지정 및 모아주택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거나 입체결정 도로로 사업시행 구역에 포함되는 송파구 또는 서울시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소규모주택정비법 43조3항에 따름
- 용도가 폐지되는 송파구, 서울시 소유의 토지 면적은 1,822㎡임

〈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〉

구분	구역명	위치	규모(㎡)	내용	비고
합계			1,822㎡	-	-
도로	모아주택 가능구역 (가로주택정비사업)	거여동 362-1	130.9	편입	송파구
도로		거여동 552-12	147.3	편입	송파구
도로		거여동 552-13	1,044.4	부분편입	송파구
도로		거여동 553-14	113.8	편입	송파구
도로		거여동 553-2	18.5	편입	송파구
대지		거여동 555-3	97.7	편입	송파구
도로		거여동 560-13	132.6	부분편입	송파구
도로		거여동 563-21	90.3	부분편입	송파구
대지		거여동 553-20	46.5	편입	서울특별시

○ 기부채납하는 정비기반시설(안)

- － 모아타운 지정 및 모아주택 사업시행시 도로 확폭을 위해 일부 편입하고, 기부채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함

〈기부채납하는 정비기반시설〉

구분	구역명	위치	규모	내용	비고
합계			978.8㎡	-	-
도로	모아주택 가능구역 (가로주택정비사업)	거여동 555동 일대	716.4㎡	도로 확폭으로 도로 편입 및 기부채납	송파구
공공시설		거여동 555동 일대	262.4㎡ (73.1㎡) ¹⁾	노인복지시설 설치 제공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환산면적 기부채납	송파구

1) 연면적 156.88㎡에 해당하는 건축물 환산부지면적임(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)

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(안)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

- － 모아타운 내 추진되는 모아주택(가로주택정비) 사업시 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하여 주변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시설을 개방형 공동이용시설로 설치하도록 권장

구분	시설유형	내용	비고
권장 시설	- 경로당, 어린이집, 작은 도서관, 놀이터, 공동체육시설, 공동작업장, 돌봄센터, 독서실, 서울형 키즈카페 등 「2030 서울플랜」 거여·마천지역 생활권 부족시설 및 보행소외권 발생 시설 확보 (주차장, 도서관)	관리지역 내 추진되는 모아주택사업을 통해 주변 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시설을 공동이용시설로 확보	-

시설 구분	구역	위치	시설의 종류	면적(㎡)	비고
공동이용시설	모아주택 가능구역 (가로주택정비사업)	거여동 555동 일원	계	1,090	통합 정비시
			경로당	160	
			작은도서관	110	
			어린이집	210	
			공동체육시설	300	
			기타공동이용시설	310	
	모아주택 가능구역1 (가로주택정비사업)	거여동 555동 일원	계	1,035	사업시행구역 별 정비시
			경로당	160	
			작은도서관	100	
			어린이집	210	
	모아주택 가능구역2 (가로주택정비사업)	거여동 552동 일원	기타공동이용시설	565	사업시행구역 별 정비시
			계	360	
			경로당	60	
			공동체육시설	300	

※ 서울시 주택 조례 제8조의4(주민공동시설) 100세대 이상 ~ 1,000세대 미만 기준 : 세대당 2.5㎡ X 1.25 이상 확보

마. 교통계획(안)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

- － 주변 주도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기존 도로망 계획을 유지하고, 모아주택(소규모주택정비) 사업을 고려하여 양산로 및 오금로변을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하여 교통을 원활하게 계획함

구 분	적용지역	계획내용	비고
차량진출입 불허구간	양산로, 오금로	－ 간선도로변 차량진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	
차량진출입 구간	불허구간 제외 전 지역	－ 이면도로에 대해 차량진출입 허용	

바. 거점사업에 관한 계획(안)

○ 해당 없음

사. 거점사업 이외의 모아주택에 대한 추진계획(안)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

- 모아주택(가로주택정비)사업 구역내 진행중인 사업은 없으며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후 통합시행 또는 사업시행구역별 추진예정임

도면표시 번호	사업구역	위 치	사업추진현황					계획(안)	비고
			면적(㎡)	토지등소유 자	기존 호수	시행자	추진 단계	면적(㎡)	
A	모아주택 가능구역 (가로주택정비사업)	거여동 555일원	-	151명	125호	-	-	11,710.0	통합 정비시
A-1	모아주택 가능구역1 (가로주택정비사업)	거여동 555일원	-	98명	86호	-	-	7,906.0	사업시행 구역별 정비시
A-2	모아주택 가능구역2 (가로주택정비사업)	거여동 552일원	-	53명	39호	-	-	3,804.0	사업시행 구역별 정비시

아. 모아주택 통합계획(안)

○ 해당 없음

자. 건폐율·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계획(안)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

■ 밀도계획(안)_통합 정비시

구 분	적용지역	계획내용	비고
시행구역내	건폐율	50%이하	A (A-1.A-2)
	용적률	기준 250%이하 법적 상한 300% 이하	A (A-1.A-2)
	높이	용도지역 층수 적용	A (A-1.A-2)
시행구역외	건폐율	60%이하	C-1
	용적률	150%이하	
	높이	용도지역 층수 적용	

※ 법 제48조 및 제43조의4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음

■ 밀도계획(안)_사업시행구역별 정비시

구 분	적용지역	계획내용	비고
시행구역내	건폐율	50%이하	A-1
		60%이하	A-2
	용적률	기준 250%이하 법적 상한 300% 이하	A-1
		기준 200%이하 법적 상한 250% 이하	A-2
	높이	용도지역 층수 적용	A-1
		용도지역 층수 적용	A-2
시행구역외	건폐율	60%이하	C-1
	용적률	150%이하	
	높이	용도지역 층수 적용	

※ 법 제48조 및 제43조의4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음

■ 건폐율 결정 조서(안)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

명칭	위치	용도지역	건폐율(%)	비고
거여동 55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	송파구 거여동 555번지 일대	제3종 일반주거지역	50%	통합정비시 또는 모아주택가능구역1 사업시행시
	송파구 거여동 552번지 일대	제2종 일반주거지역	60%	모아주택가능구역2 사업시행시
	송파구 거여동 555번지 일대	제1종 일반주거지역	60%	공공시설용지

※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54조 준용

■ 용적률 결정 조서(안)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

구분		위치	용적률(%)		비고
도면 표시 번호	사업구역		기준	법적 상한	
A	모아주택 가능구역 (가로주택정비사업)	거여동 555일원	250%	300%	통합정비시
A-1	모아주택 가능구역1 (가로주택정비사업)	거여동 555일원	250%	300%	사업시행구역별 정비시
A-2	모아주택 가능구역2 (가로주택정비사업)	거여동 552일원	200%	250%	사업시행구역별 정비시
C-1	모아주택 가능구역 (가로주택정비사업)	거여동 555일원	150%	-	공공시설용지

주) 1. 기준용적률 :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55조에 따른 용적률

주) 2. 상한용적률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

주) 3. 상한용적률의 적용 :

① 용도지역 변경구역은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」 제43조의 5에 따라 상향된 용도지역의 용적률에서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건설공급

②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」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20%이상 건설공급하여 법적상한용적률 적용

※ 법 제48조 및 제43조의4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음

차. 건축물의 배치·형태·용도·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(안)

■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(안)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

구 분	적용지역	계획 내용	비고
건축한계선	A (A-1,A-2) C-1	- 건축한계선 2m 적용 - 건축한계선 3m적용(오금로,양산로, 오금로56길)	- 가로 환경 및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후퇴구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계획
벽면한계선	오금로	- 저층부(2층이하) 5m 적용	- 오금로변 충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저층부 벽면한계선 지정
공공보행통로	A (A-1)	- 공공보행통로 4m 적용	- 기존 보행 가로망 체계 유지를 위하여 공공 보행통로 계획
배치계획	A-1	- 가로변 경관 차폐 및 장벽 형성 등 위압감 완화를 위하여 건축계획시 매스를 분절하여 개방적 시야 를 확보	- 장대한 입면 형성을 지양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형성을 위한 계 획

구분	계획 내용	비고
보도형 전면공지 조성지침	1. 전면공지는 연결한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 없이 조성한다. 2. 전면공지 내에는 공작물, 담장, 계단, 주차장 등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 할 수 없다. 3. 포장패턴은 공공부문의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시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, 바닥은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포장토록한다. 4. 보도부속형 전면공지의 설계시보도공사 상세설계 표준도 작성지침 및 장애없는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행계 획을 준용하도록 하며 사업시행전 송파구 관련부서에 설계지도 점검을 득하여야 한다.	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전면공지(보도형)계획

■ 건축물의 용도 계획(안)

구분		적용지역	계획내용
A	유형	A (A-1,A-2)	●공동주택 용지
	용도 허용		●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●「주택법」 제2조 13호, 14호에 의한 부대·복리시설 ●「서울특별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」 제44조 공동이용시설 ●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(저층부1~2층에 한하여 허용)

구분			적용지역	계획내용
		불허		•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C	유형		C-1	•공공시설 용지
	용도	허용		•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1호 가목, 나목, 다목의 시설
		불허		•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카.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계획(안)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

○ 임대주택 총 142호 공급 예정

- 사업시행구역별 정비시 총 131호 공급예정

구분		위치	전체 세대수	임대주택세대수		임대주택 인수예정자	비고
도면표시 번호	사업구역			세대수	비율 (%)		
A	모아주택 가능구역	거여동 555일원	359	142	39.6	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	통합정비시
A-1	모아주택 가능구역1	거여동 561일원	235	94	40.0		사업시행 구역별 정비시
A-2	모아주택 가능구역2	거여동 552-1일원	88	37	42.0		사업시행 구역별 정비시

※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

※ 상기의 세대수, 임대주택 세대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,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

타.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(안)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

○ 모아타운 내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은 통합 정비와 사업시행구역별 정비로 구분하여 계획함

- 통합시행에 관한 사항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름

- 통합 정비시 주변 지역의 개발여건에 대응 및 개발의 실현성을 위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, 사업시행구역별 정비시 현재 용도지역을 고려 사업시행구역별 제3종일반주거지역(1구역), 제2종일반주거지역(2구역)으로 변경함

■ 용도지역계획(안)_통합 정비시

구분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계	12,615.7	-	12,615.7	100.0	-
제1종일반주거지역	4,364.1	감)3,916.8	447.3	3.5	-
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	6,130.1	감)5,671.7	458.4	3.7	-
제2종일반주거지역	2,121.5	감)2,121.5	-	-	-
제3종일반주거지역	-	증)11,710.0	11,710.0	92.8	-

※ 사업시행구역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

■ 용도지역계획(안)_사업시행구역별 정비시

구분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계	12,615.7	-	12,615.7	100.0	-
제1종일반주거지역	4,364.1	감)3,916.8	447.3	3.5	-
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 이하)	6,130.1	감)5,671.7	458.4	3.7	-
제2종일반주거지역	2,121.5	증)1,682.5	3,804.0	30.1	-
제3종일반주거지역	-	증)7,906.0	7,906.0	62.7	-

※ 사업시행구역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

과.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(안)

○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(안)

- 특별건축구역은 관리계획 고시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시점에 지정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-	특별건축구역	모아주택가능구역1~2	-	증)12,615.7	12,615.7	

※ 상기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사항 및 사유 등은 사업시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, 사업시행시기가 동일할 경우 적용 가능

■ 「건축법」 제 73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특례 및 제74조에 따른 계획에 대한 사항

구분	배제 및 완화	비고
건축법	대지안의 조정(제42조), 건폐율(제55조), 용적률(제56조), 대지안의 공지(제58조), 건축물의 높이제한(제60조),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(제61조) 등	
주택법 (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)	공동주택의 배치(제10조), 기준척도(제13조), 비상급수시설(제35조), 난방설비(제37조) 등	
통합적용	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「주차장법」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원의 설치	

※ 상기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사항 및 사유 등은 사업시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하.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과의 연계 계획

○ 해당없음

거. 경미한 변경에 관한 계획

○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

- 모아타운의 면적을 100분의 5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
- 사업시행기간을 계획된 기간의 3년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
- 관리계획을 법 제43조의3 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완화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
-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
- 계산착오 및 오기·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
-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

3. 관련도면

- 붙임 참조(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)

4. 관계도서

-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(☎ 02-2133-8237) 및 송파구 주택사업과(☎ 02-2147-2889)에 비치·열람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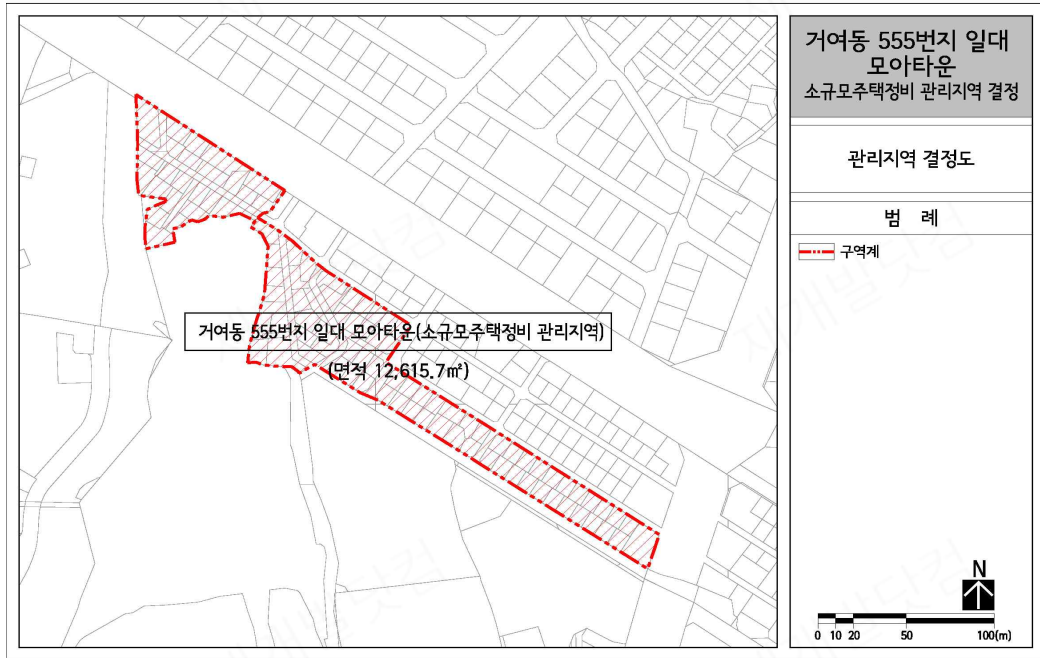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
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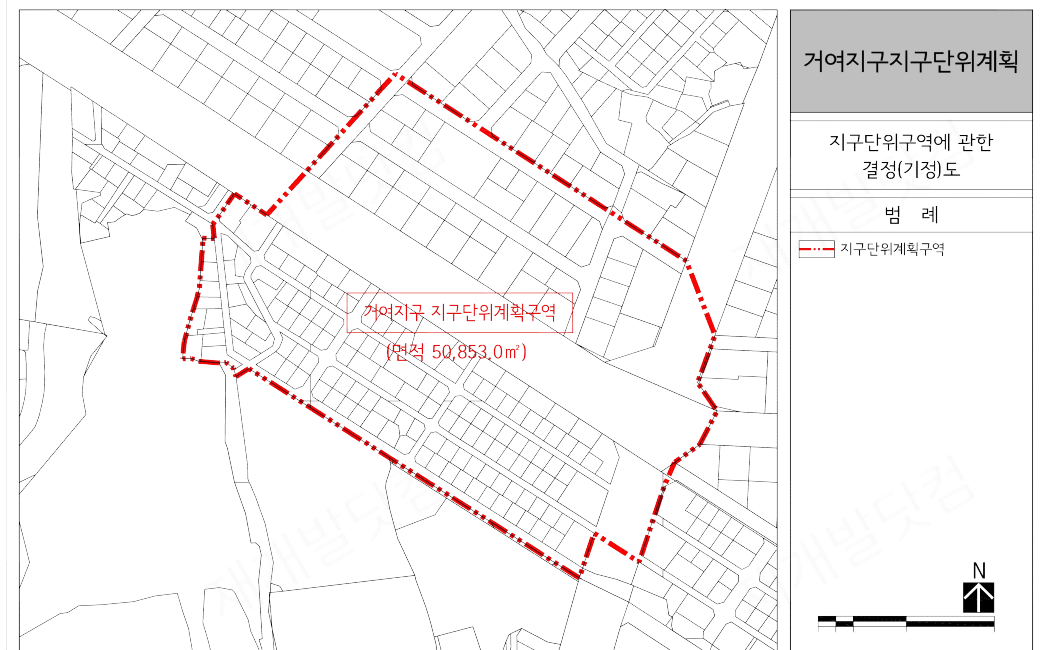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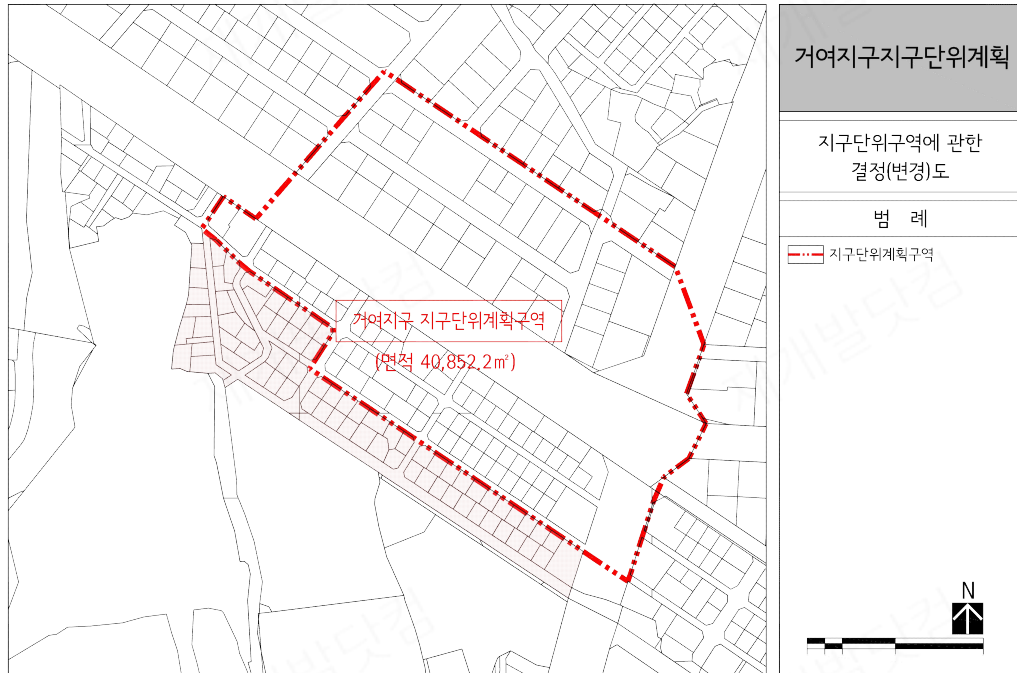
■ 관리지역 결정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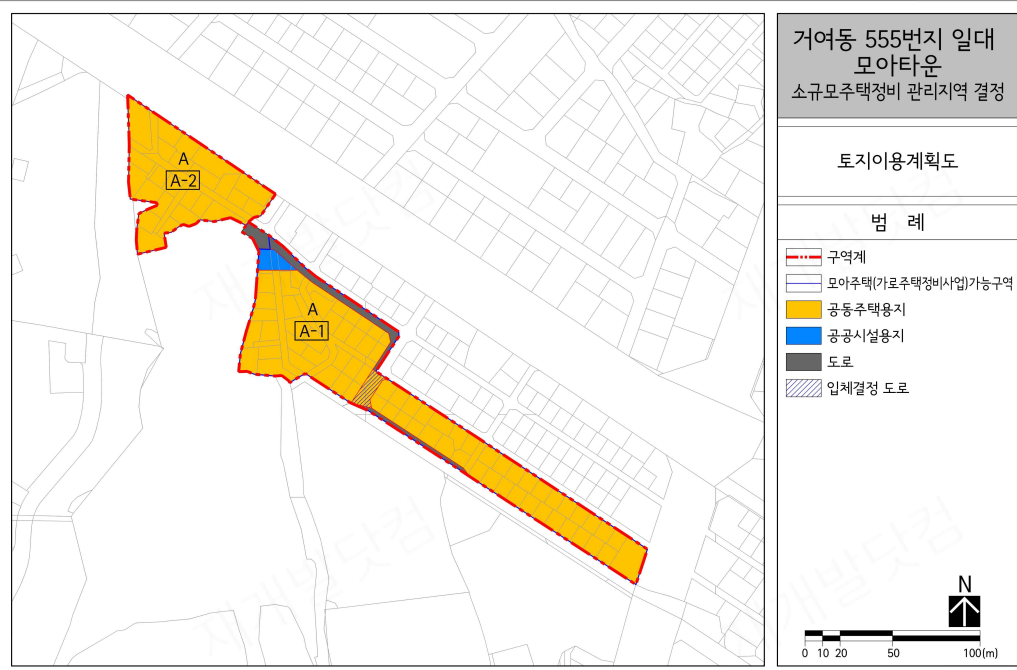
■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_기정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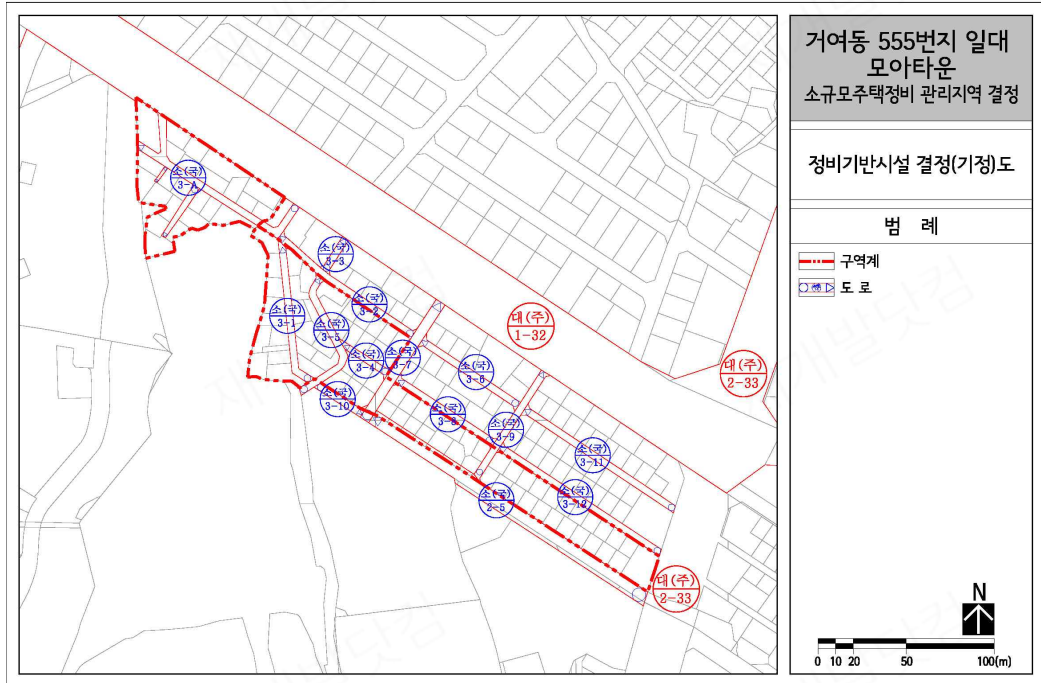
■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_변경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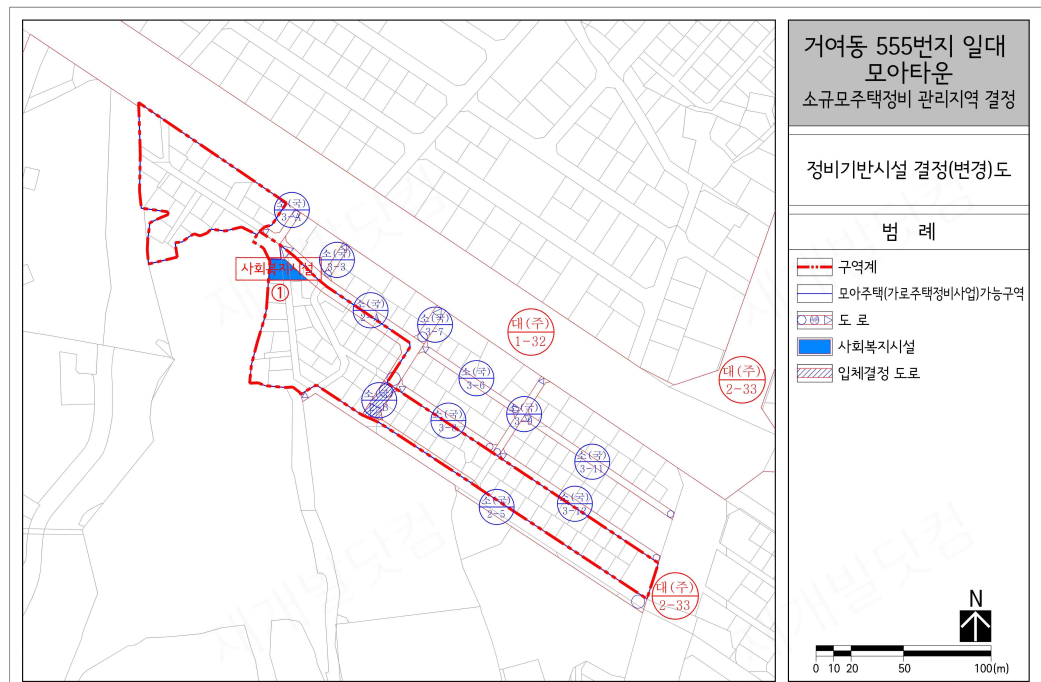
■ 토지이용계획(안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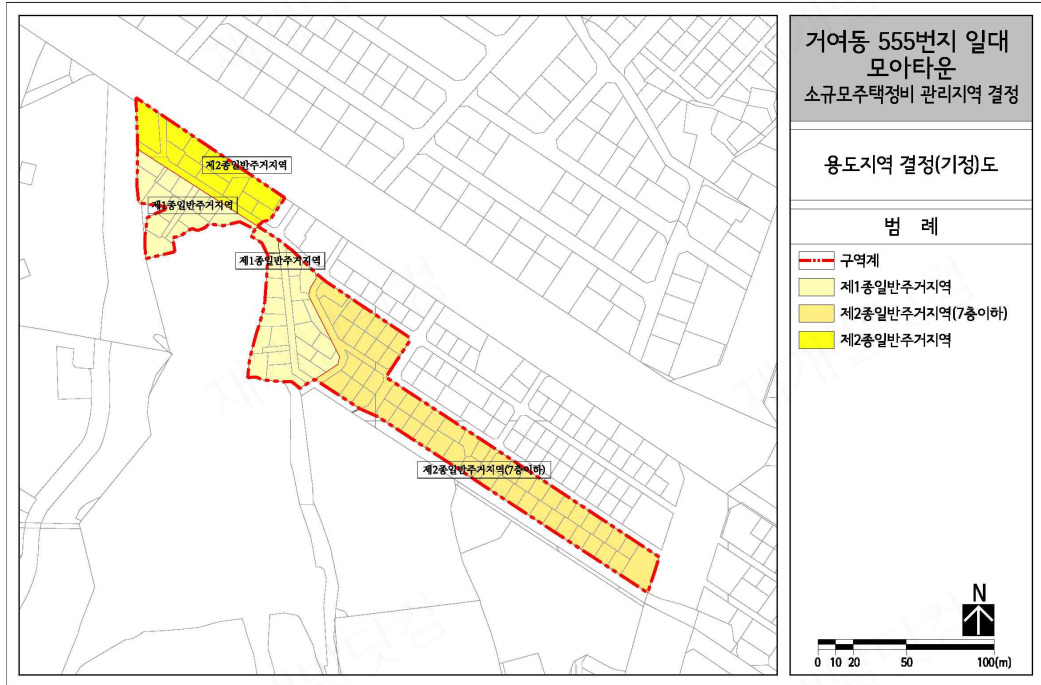
■ 정비기반시설 결정(기정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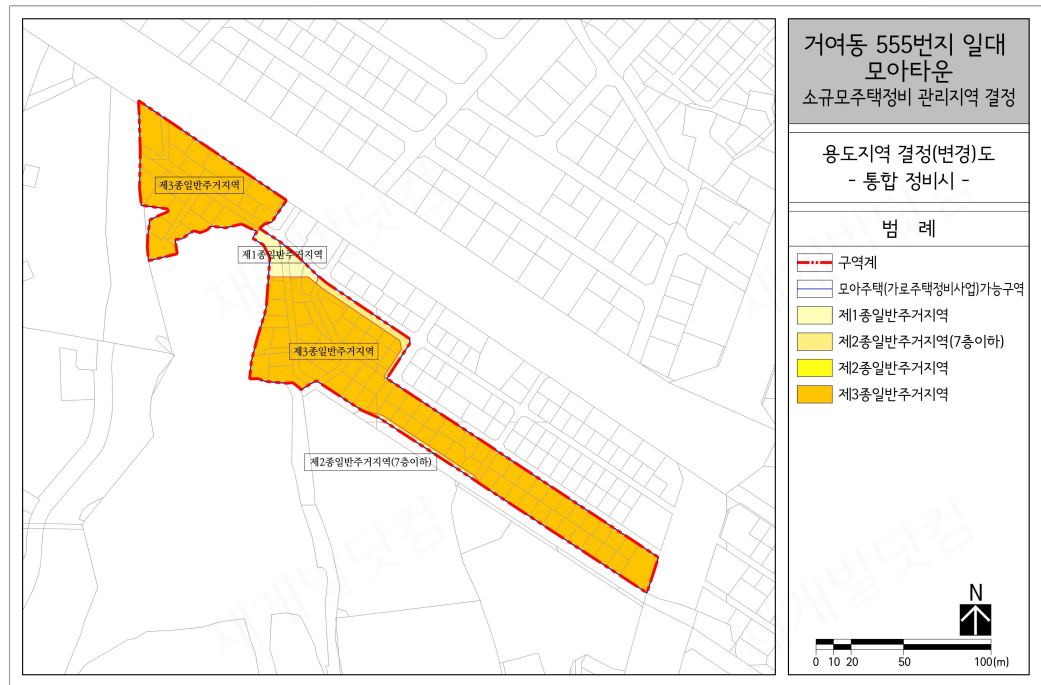
■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(안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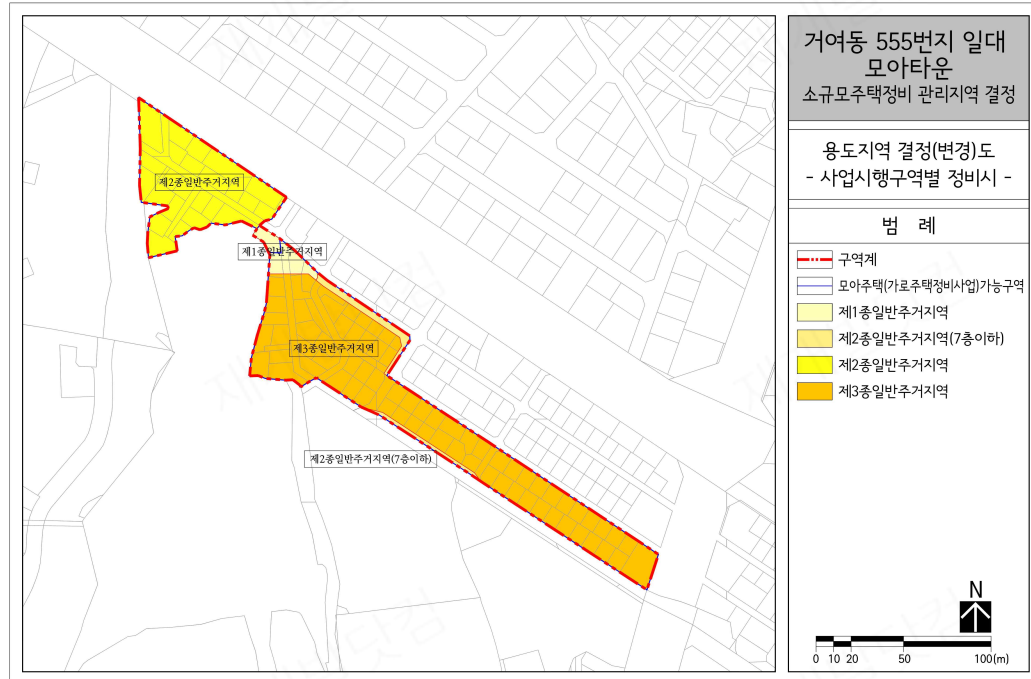
■ 용도지역 결정(기정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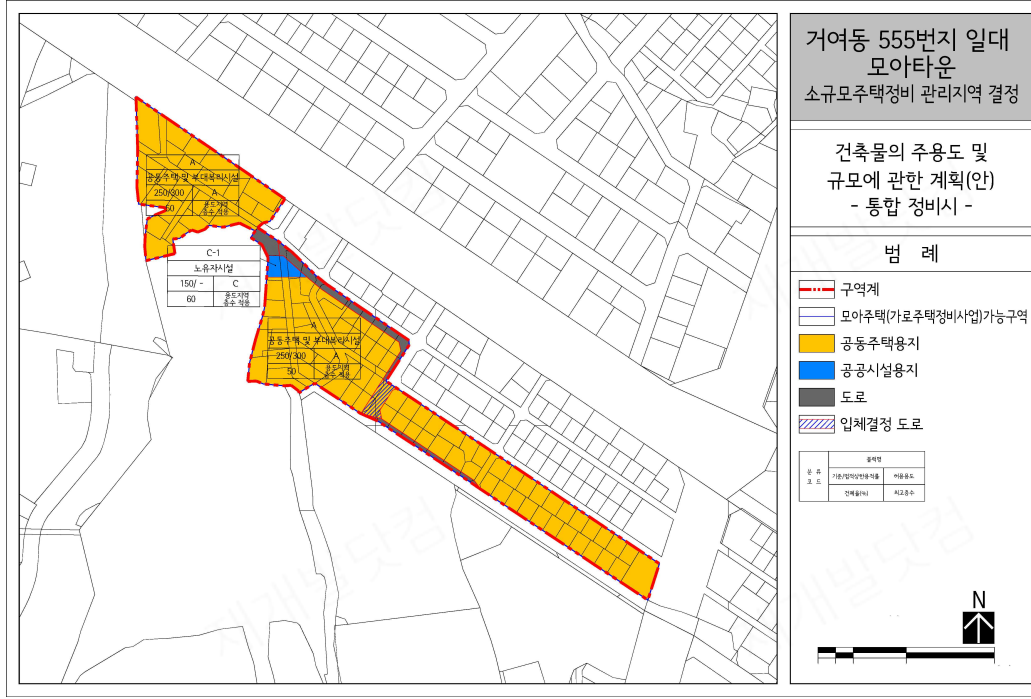
■ 용도지역 변경 계획(안)_통합정비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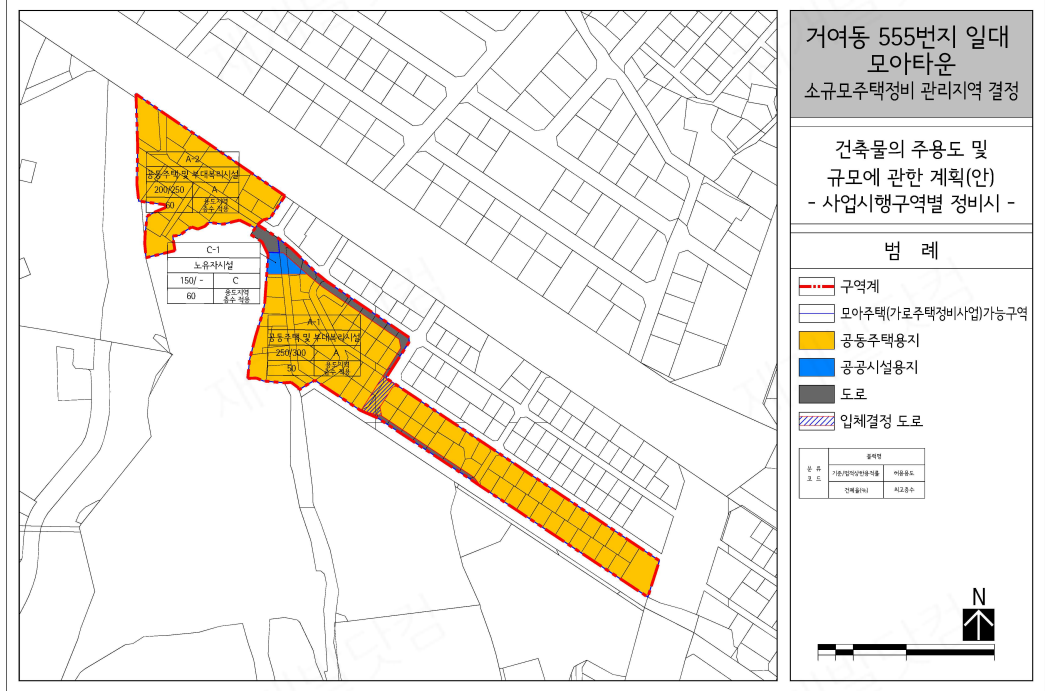
■ 용도지역 변경 계획(안)_사업시행구역별 정비시



■ 건축물의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(안)_통합정비시



■ 건축물의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(안)_사업시행구역별 정비시



■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(안)

